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자격관리 및 운영규정

(신설 2015. 10.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민간자격(이하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라고 한다)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란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이다.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의 기획·운영·관리에 있어 '안전'을 기반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며,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한다.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 및 관련 업무종사자(시험위원 등), 기타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와 관련 있는 자(수검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검정시행, 청소년활동 안전지도 교육과정 및 기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관리·운영조직

제4조(청소년활동안전지도사자격검정위원회) ①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훈련원 내에 '청소년활동안전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자격검정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자격검정위원회에는 자격검정위원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검정기획담당, 출제·심사담당, 검정관리담당, 인쇄담당 등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5조(업무) 자격검정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제도의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험위원의 위촉, 임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격증 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
- ② 출제·심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채점 및 검정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검원서 교부·접수, 수검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3. 검정시험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
 5.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6. 검정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인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시험지에 대한 인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유출과 보안에 관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6조(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연령은 20세 이상,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1급’ 또는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응시종목	등급	응시자격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1급	1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 2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청소년활동 관련 200시간 이상의 안전지도, 교육, 강의를 실시한 자 3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1급 과정을 이수한 자
	2급	1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자

제7조 (자격등급)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의 자격등급은 1급, 2급으로 구분한다.

- ①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자격은 특성상 활동 가능한 전문과목의 수와 숙련 정도에 따라 1급, 2급으로 등급 분류한다.
-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에 유효한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교육과정 중 중복되는 부분(응급처치/수상안전)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관련 전문지식과 교육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안전에 관한 기획□운영□관리 및 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로 한다.

①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1급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서류심사, 실기고사, 필기고사 등)을 합격하여,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②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2급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실기고사, 필기고사)을 합격하여,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1급	①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활동 안전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안전에 관한 기획·운영·관리·평가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보유한 최고급 수준의 지도사이다. ② 청소년지도자 2급 자격자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의 및 강사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관련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할 수 있다. ④ 수상활동, 산악활동 등의 응급상황시 응급처치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다.
	2급	① 준전문가 수준의 활동 안전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안전에 관한 기획·운영·관리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한 고급 수준의 지도사이다. 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

제9조(검정방법, 검정과목)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운영 규정)

등급	검정 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1급	서류	경력 증명	서류 심사
	교안	강의교안 작성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교안 작성
	강의	시범 강의	시범 강의
		필기시험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인권, 청소년의 상담, 청소년활동계획, 청소년 야영안전, 청소년 법령,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지도 방법론, 청소년활동의 조직과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서 선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실기시험	1. 응급처치(인명구조, 응급처치, 골절처치, 이송) 2. 심폐소생술 및 AED 3. 산악활동, 수상활동 시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합격판정	1. 서류, 교안, 시범강의 80점 이상 2. 필기시험 80점 이상 3. 실기시험 80점 이상	
2급		필기시험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인권, 청소년의 상담, 청소년활동계획, 청소년 야영안전, 청소년 법령,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지도 방법론, 청소년활동의 조직과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서 선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실기시험	1. 응급처치(인명구조, 응급처치, 골절처치, 이송) 2. 심폐소생술 및 AED
		합격판정	1. 필기시험 70점 이상 2. 실기시험 70점 이상

제10조(채점 절차 및 방법) ① 채점은 답안지마다 다른 위원들이 번갈아 채점하는 크로스체킹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답안지마다 3차에 걸쳐 채점한다.

② 채점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명시된 과목별 규정에 근거하여 채점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4장 자격등록

제11조(자격증 수여 및 등록) ①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는 자격검정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며,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해 자격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불합격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차후 2회까지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②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1급’ 또는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2급’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만원의 검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격의 갱신) ①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자격은 자격취득 시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참여해야 한다.

- ②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 ③ 한국스카우트연맹은 1년에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청소년활동 안전지도사 자격검정을 관리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수험원서, 검정의 집행, 채점, 자격증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조 청소년활동안전지도사자격검정위원회가 본 운영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분실, 훼손, 기재 사항의 변동 등으로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의 재발급 수수료는 30,000원으로 한다.